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120
------	------

2023. 09. 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4일, 최기찬 의원 외 30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9.11.)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최기찬 의원)

1. 제안이유

- 전통사찰의 지원은 상위법상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과 별도의 법률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전통사찰은 시대적 특색을 갖고 한국 고유의 불교 문화 예술 및

건축사와 한국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수 있어 그 문화적 가치와 상징성을 특수하게 보유하고 있음.

- 이에 별도의 조례를 통해 전통사찰의 보수·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도시 서울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나. 전통사찰보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제정안의 개요

- 제정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문화행사, 보수·정비 등 전통사찰의 보존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존 조례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전통사찰 지원사업 현황

-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며, 전국 총 982개소 중 서울은 60개임¹⁾).

- 서울시는 매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방재시스템 구축,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국비·시비·구비와 매칭으로 지원하고 전통사찰 시설 확충 및 정비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전통사찰 지원사업 현황 >

연번	사업명	2023년 예산	근거
1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국45:시22.5구22.5:자부담10)	(x1,372) 2,058백만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2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방재시스템 구축 (국45:시22.5구22.5:자부담10)	(x120) 180백만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3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국50:시25:구25)	(x269) 403백만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4	전통사찰 시설확충 및 정비지원	4,330백만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다. 제정안의 필요성

- 전통사찰의 발전은 서울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수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불비함.
- 이에 전통사찰은 보존해야 할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새로운 전통과

1) 서울시 전통사찰은 종로구 12개, 성북구 9개, 강북구 7개, 은평구 5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문화를 창조하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사문화 공간으로서 지원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통사찰의 문화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음.

- 특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을 조례로 법규화한 타 지방자치단체로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2곳으로 별도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례 현황 >

연번	지방자치단체	조례명
1	경기도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충청남도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라. 주요 조문별 검토

(1) 목적과 시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 제정안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전통사찰의 보존·관리과 활용에 필요한 정책의 발굴과 지원에 대해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전통사찰 및 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사업계획의 조정 등의 업무가 시장에게 이양되어 있어 시장의 책무 신설은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함.

(2)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4조~안 제6조)

- 제정안은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의 권고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4조).
- 또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임기 2년에 구성인원을 9명 이내 위원으로 사업계획의 심의 등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문화재 등에 관한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 하되,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불교문화 및 불교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 되도록 시장 소속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5조).
- 따라서 시장 소속의 심의·자문 기구로서의 조례상 지위가 확보되며, 역사·전통문화 분야의 전문가와 불교계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전통사찰의 보존과 관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자의적인 행정 집행에 따른 민원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재 서울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기설치되어 있어 새롭게 신설하면 위원회 설치 근거가 중복되므로 정의 조항을 포함한 전통사찰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안 제7조)

- 제정안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전통사찰의 보수와 복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정비사업 등 전통사찰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 정비 및 방재시스템 등과 관련된 사업을 기수행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사업 등 예산지원에 대한 명문화 규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마. 종합검토의견

- 제정안은 전통사찰의 보존과 지원을 위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도시 서울로 나가는데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공감함.
- 다만,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내 ‘전통사찰’에 대한 정의 규정,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규정, ‘지원 대상’ 등은 중복 규정이므로 이를 정비해야 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기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120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최기찬,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김인제,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강산, 박승진, 박영한,
박칠성, 봉양순, 송도호,
신동원, 신복자, 왕정순,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병도,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임규호, 임종국,
정준호, 한 신, 홍국표,
황철규 의원(31명)

1. 제안이유

- 전통사찰의 지원은 상위법상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별도의 법률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전통사찰은 시대적 특색을 갖고 한국 고유의 불교 문화 예술 및 건축사와 한국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수 있어 그 문화적 가치와 상징성을 특수하게 보유하고 있음.
- 이에 별도의 조례를 통해 전통사찰의 보수·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도시 서울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나. 전통사찰보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그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법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법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문화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적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과 제5조제7항에 따라 정하여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1.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
 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3.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